

<p>(參 照)</p> <p>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별표1]</p>	
<p style="text-align: center;">물품의 품종·상태 구분</p> <p>1. 물품의 분류</p> <p>가. 비품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p> <p>나. 소모품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p> <p>2. 품종구분 기준</p> <p>가. 비품 (1) 내용년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2)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3)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p> <p>나. 소모품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2) 내용년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3)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4) 내용년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p> <p>3. 물품상태 분류기준</p> <p>가. 신 품-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나. 중고 품-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다. 요정비품-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라. 폐 품-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p>	
<p>.....</p> <p>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1항중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를 “토지를 취득·등기하는 경우(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p>	<p>서 당해 물건의 소유권을 위탁자인 조합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직접 주택조합을 수탁자로 하여 등기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주택조합이 신탁등기를 병행함으로써 과세하는 때에는 조합원명의로 등기하는 때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이미 조합 또</p>

<p>는 조합원에게 과세된 경우에는 같은 세목을 다시 과세하지 아니한다)하되 제2항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그러하지”를 “과세면제하지”로 한다.</p> <p>제18조제2항중 “1세대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을 “1세대1주택이 되는 경우와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의 임대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적용예) 제18조제1항의 과세대상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검사를 받는 조합주택부터 적용한다.</p>	<p>일, 관람시간, 입장이 금지되는 관람자의 범위, 전시실내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일반관람객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博物館 및美術館振興法施行規則 제9조에 규정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만 국가 또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전시의 경우 무료관람이 가능토록 하며, 전시실을 대관받아 전시하는 자는 일반관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람료는 대관자가 결정토록 하며, 무료관람 대상자를 규정하고, 미술관 자체전시예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미술관 전시실을 대관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미술관 전시실의 대관허가신청, 대관허가심사, 대관허가 제한대상 등을 규정하고, 대관료 납부, 대관료 감면, 대관허가의 취소사유, 대관자의 준수사항, 시설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등을 규정하며, 미술관 소장 작품은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토록 하고, 소장작품의 관리·열람·작품기증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미술과 관련된 전문가 등으로 12인 이내의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 서울시 미술시책의 방향정립과 미술분야의 진흥계획 등에 관하여 심의·자문토록 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하여 우리 文化教育委員會에서 96년 12월 20일 제14회 정기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대관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원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p>
<p>11. 서울特別市立美術館運營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p> <p>12. 서울特別市立藝術團體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p> <p>(15時 44分)</p> <p>○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特別市立美術館運營條例案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特別市立藝術團體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p> <p>(議事棒 3打)</p> <p>文化教育委員會의 林鍾化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林鍾化議員 文化教育委員會 소속 林鍾化議員입니다.</p> <p>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p> <p>서울特別市立美術館運營條例案과 서울特別市立藝術團體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의 심사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p> <p>먼저 이번 회기에 심사한 서울特別市立美術館運營條例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同條例案은 1996년 10월 2일 서울特別市長으로부터 우리 議會에 제출되어 議長으로부터 1996년 10월 5일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p> <p>同 條例案은 미술관 실정에 맞는 전시관람, 대관허가, 소장작품 구입, 기타 미술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미술관 전시회 관람에 필요한 개관 및 휴관</p>	<p>자세한 내용은 매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다음, 이번 회기에 심사한 서울特別市立藝術團體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同 改正條例案은 1996년 10월 17일 서울特別市長으로부터 우리 議會에 제출되었으며, 議長으로부터 1996년 10월 18일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사안으로, 시립극단 창단에 따라 극단운영의 일원화를 위하여 타 시립예술단체와 같이 세종문화회관 관장에게 권한을 위임코자 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우리 文化教育委員會에서 1996년 12월 20일 제14회 정기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서울시립극</p>